

## [요약집 이후 개정사항 및 2020년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공법 전체 수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법 전체 수정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등
건축 요약집 p113 기본서 p445	신축에서, 개축에서 철거	해체
공개공지 요약집 p137 맨 아래 기본서 p492 맨 위	<p>③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43조 제4항, 영 제27조의2 제7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li> <li>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li> <li>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i> </ul> </li> <li>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li> <li>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li> </ol> </div>	
주택법 ⑤ 발기인의 자격기준 요약집 p180	<p>⑤ 발기인의 자격기준 :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11조의3 제⑥항, 영 제24조의3 제①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li> <li>②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할 것</li> </ul> </li> </ol>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①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주택법 5. 주택조합의 해산 등 요약집 p186	5.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2 제1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법 제14조의 2 제2항, 영 제25조의2 제3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영 제25조의2 제1항).                      1.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u>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u>                      2.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u>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u> </div>	
도시개발법 요약집 p234 박스 3 기본서 p247 박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서 p331 아래 박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②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 : 100분의 15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② 재개발사업 ㉠ 임대주택 : 100분의 20 이하
농지법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요약집 p332 기본서 p659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2] ① 시·구·읍·면의 장은 <u>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② <u>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도 10년으로 한다.</u>	
농지법 위탁경영 4번의 ③ 추가 요약집 p335 기본서 p661	위탁경영 4번의 ③ 추가 ③ <u>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u>	

## [2020년 중요 개정지문 ox]

**예제 01**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해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x)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0]. 관리지역[x]

**예제 02**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중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이다. [ ]

**해설** (0) → 종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x],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x]”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개정됨

**예제 03** 국토계획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해설** 2년(x) → 3개월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제 04**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

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

**해설** 7년(x), 7년(x) → 5년(0), 5년(0)

**예제 05**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해설** 10년(x), 10년(x) → 7년(0), 7년(0)

**예제 06** 국토계획법상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x) →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통지[0]

**예제 07** 건축법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85㎡ 이하로 변경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해설** (x) →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예제 08**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 ]

**해설** 신축(x) → 개축이다.

**예제 09**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아닌 것은?

- ①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 ② 공개공지등에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③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④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 ⑤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해설** ② 공개공지등에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개공지등의 제한 행위로서 아니된다.

**예제 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④ 200m<sup>2</sup>인 목구조 건축물[x] → 연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0] /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m<sup>2</sup>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제 11** 주택법상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해설** 20% (x)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제 12** 주택법상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④ 등록사업자, ② 중개업자,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④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④

**예제 13**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해설** 없다. (x)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제 14** 주택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 ]

**해설** 80% 이상 (x) → 50% 이상

**예제 15**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한 자 이어야 한다. [ ]

**해설** 6개월 전부터 (x) → 1년 전부터

**예제 16** 주택법상 모집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해설**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x)→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예제 17**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 ]

**해설** (0)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권리 능력없는 사단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예제 18**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해설** 없다.(x) →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제 19**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해설** 20일 이내(x) → 15일 이내

**예제 20** 조합원 명부 및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

**해설** 20일 이내(x) → 15일 이내

**예제 21**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2년, 2년, 3개월, 3분의 2, 20

**예제 22**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3년, 3년, 3개월

**예제 23**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④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⑤ 통보하여야 한다. (x)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제 24** 도시개발법상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

**해설** 한국철도공사(x)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x)]

**예제 25** 농지법상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해설** 15년 (x) → 10년으로 한다.

**예제 26** 농지법상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한다. [ ]

**해설** 5년 (x) → 10년으로 한다.

**예제 27** 농지소유자는 농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

**해설** (0) →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예제 28**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 ]년 이상(이모작을 위하여 [ ]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 ]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3년, 8개월, 5년

**예제 29** 농지법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해설** (0) → 농지전용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예제 30**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교통사고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해설** 3개월 미만(x)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盡人事待天命

- 사람이 제 할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

심작[心作] 최성진 드림